

제 호

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

대표자:

생년월일:

사료시험검사기관명:

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:

소재지:

검정성분의 범위:

「사료관리법」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

(뒤쪽)

변경내용

[illegible]